



### 1. 전기공사업 등록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전기공사업 등록인력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자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Question

#### Answer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사기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전기기사를 다른 회사에 선임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사는 이미 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10. 26)

### 2.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점유자와 사용자중 누가 처벌받는지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와 사용자중 누가 처벌받게 되는지 및 처벌기관이 어디인지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비용부담이 크며, 점검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의사는

Question

#### Answer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나 전기재해는 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입을 수도 있고 또한 설비사고로 인한 파급영향이 상위계통까지 미치게 되므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5. 26)



### 3.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전기수전용량 5,500kW 아파트에 현재 전기안전관리자(1명)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Question

#### Answer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일정기간(3일 21시간) 받아야 합니다.

◎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전기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달과 전기설비의 복잡화·다양화 그리고 관련법규의 빈번한 개정 등 안전관리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소유자등이 구분하여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은 모두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5. 26)

### 4.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 함은 무엇인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지

Question

#### Answer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제1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였다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근거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7. 2)